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 2003년 4월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4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차량등록사무소 주차장부지인 국유지를 취득 차량등록사무소의 주차공간을 확장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 문산읍사무소 진입로 부지중 외기노조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진입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며,
- 낡고 노후되어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법원읍 구 신화섬유를 매각하여 향후 행정목적 활용을 위한 재산의 취득(신축)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취 득

취득 재산명	위 치	면적(㎡)	금액(천원)	비 고
차량등록사무소부지	문산리31-4	1,029	583,443	
문산읍사무소진입부지	문산리17-32	645	326,048	

○ 처 분

처분 재산명	위 치	면적(㎡)	금액(천원)	비 고
신화섬유	법원리438-1외 3필지	건물: 657.39 토지: 1,895	284,250	

3. 검토의견

- 동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차량등록사무소 주차장부지인 국유지 일부 및 문산읍사무소진입부지의 취득과 구 신화섬유의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제95조,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작성·제출되었으므로 법령적합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취득재산인 문산읍 문산리 31-4번지의 차량등록사무소 부지는 제57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승인된 “2002년도파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차량등록사무소 신축부지에 포함된 재정경제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기 신축된 차량등록사무소의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문산읍 문산리 17-32번지 토지는 외기노조 소유의 토지로서 문산읍사무소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
 특히, 동 부지는 현재 문산읍사무소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임차료를 세출예산(6.628천원)에 반영하여 지출해 오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동 토지매입은 적절한 조치로 보여지며 장기적으로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매각처분 대상토지인 법원읍 법원리 438-1외 3필지에 위치한 구 신화섬유 건물은 낡고 노후되어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유재산으로 금번 동 재산의 매각을 통하여 향후 다른 행정목적 활용을 위한 재산의 취득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地方財政法》

제77조(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地方財政法施行令》

第95條(雜種財産의 賣却)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2항 각호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3. 기타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 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때

①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坡州市公有財産管理條例》

제35조(公有財産 管理計劃) ①법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정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취득 세부내역

1. 차량등록사무소 부지

- 대상토지 : 문산읍 문산리31-4, 전 : 1,029㎡
- 취득예정가 : 감정평가금액으로 취득 예정임.
 $378,000\text{원} \times 1,029\text{㎡} \times 1.5 = 583,443,000\text{원}$
- 소유자 : 국(재정경제부)
- 취득방법 :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한후 수의계약
- 국토계획 : 일반주거지역

2. 문산읍사무소 진입부지

- 대상토지 : 문산읍 문산리17-32, 대 : 21,936㎡ 중 645㎡
- 취득예정가 : 감정평가금액으로 취득 예정임.
 $337,000\text{원} \times 645\text{㎡} \times 1.5 = 326,048,000\text{원}$
- 소유자 : 외기연립
- 취득방법 : 협의취득
- 국토계획 : 일반주거지역

3.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77조
-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공유재산 처분 세부내역

1. 법원읍 구 신화섬유

○ 대상

- 토지 : 법원읍 법원리 438-1, 전 1,025㎡
 법원읍 법원리 439-3, 전 321㎡
 법원읍 법원리 439-8, 전 486㎡
 법원읍 법원리 439-9, 전 63㎡
- 건물 : 1층(공장) 343.74㎡ 세멘벽돌스라브
 2층(공장) 313.65㎡ 세멘벽돌스라브

○ 처분예정가 : 감정평가금액으로 처분 예정임.

- 토지 : 150,000원 × 1,895㎡ = 284,2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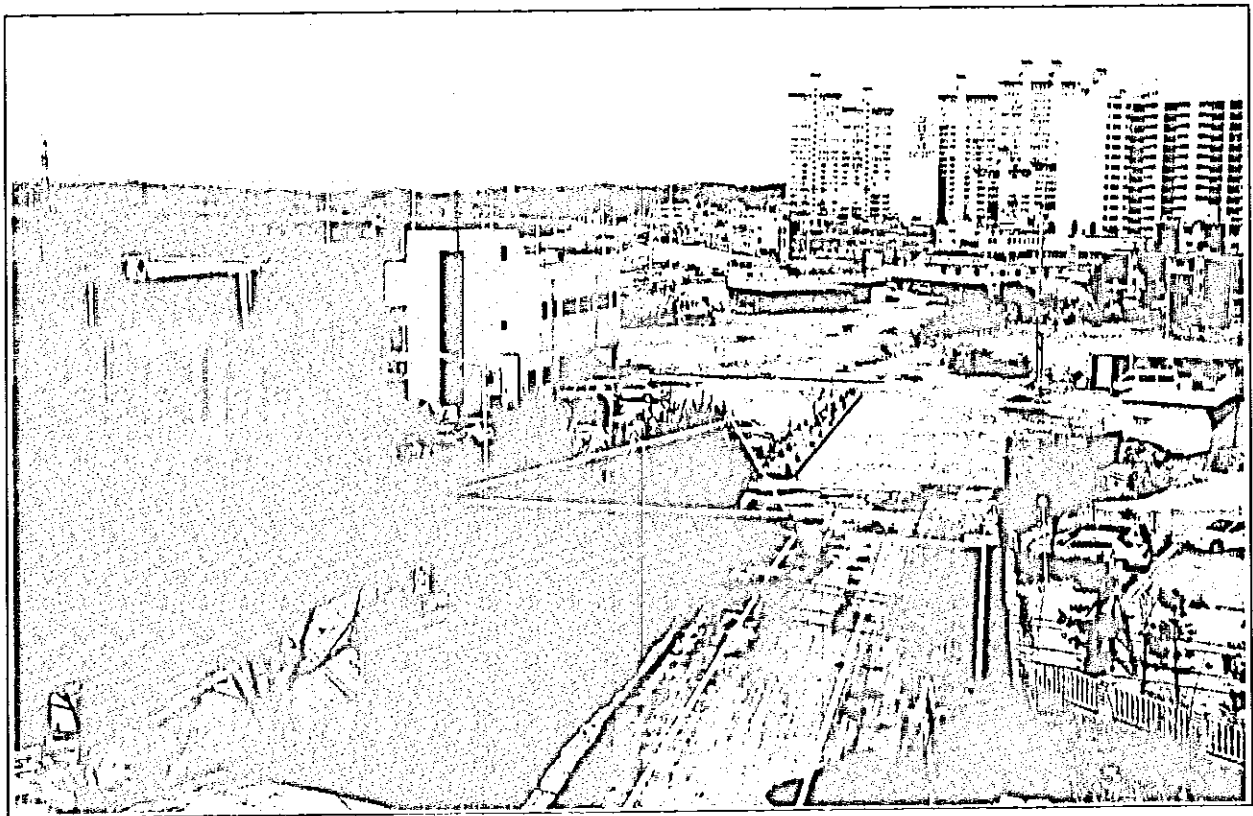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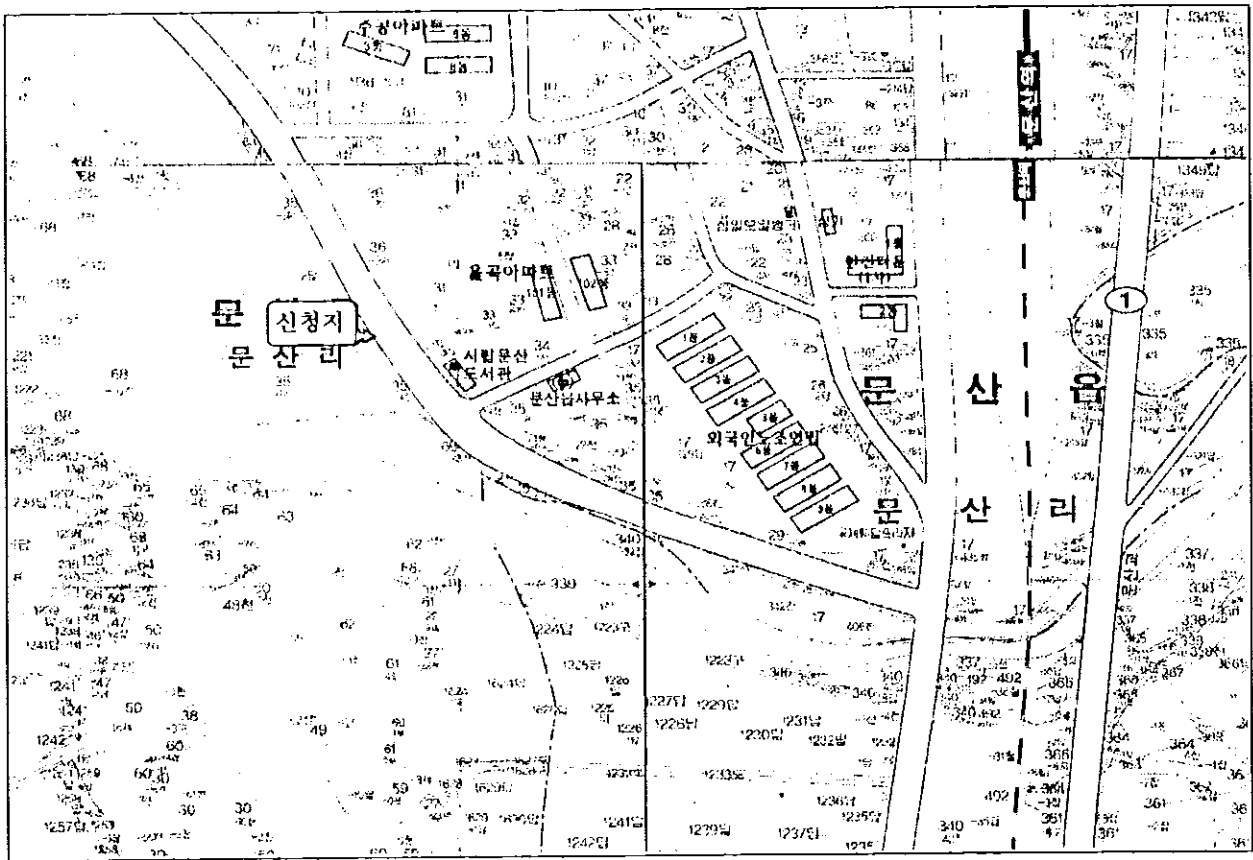
○ 처분방법 : 공개경쟁입찰

○ 국토계획 : 일반주거지역

○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차량등록사무소부지 위치도 및 전경(취득)





신화섬유 위치도 및 전경(처분)

